

## 관세체납해소 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The Study on the Legal research for the Arrears Customs Duties Solution of the Transgression

라공우(Kong-Woo La)

경인여자대학 무역과 부교수

이선표(Seon-Pyo Lee)

경인여자대학 세무회계과 부교수

홍길종(Gil-Jong Hong)

경인여자대학산학단 전임연구인력(경영학박사)

### 목 차

I. 서 론	IV. 관세체납 범칙물품 처리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
II. 관세의 국가재정기여와 관세체납처리과정	V. 결 론
III. 관세행정벌 제도와 관세체납 범칙물품 체납 해소방안의 법적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 Abstract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whether the current Korean customs punishment system is appropriate and reasonable for eliminating customs offenses, such as smuggling, and explores ways to improve the penal provisions of customs law.

The current multiple fine system, governed by the penalty for evasion of customs duty, penalty for abatement and exemption by fraud or unfair practices and penalty for drawback by fraud or unfair practices, clearly violates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no excess punishment. Therefore it should be changed to a fixed fine system and confiscate and collect in addition the items with customs evasion and exemption by fraud or unfair practices.

Key Words : Arrears Customs Duties Solution, Arrears Customs Duties

\* 본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21-B00085).

## I. 서론

관세청이 1년동안 징수하는 조세의 규모는 전체 국세의 약 25~27%를 차지(2007년 징수액은 39조3천억원으로 전체의 24.6%)하고 있으며, 관세는 전체 국세의 약 5% 내외이다. 2007년도 수입분중 내국세를 제외한 관세징수액은 7조4,107억원으로 2006년 보다 5,523억(9.4%)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입액의 증가(전년대비 15.3%)에 기인하며, 전체적으로 관세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고 있다. 이처럼 관세의 세입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관세가 체납되면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경제적인 면으로는 체납은 징수해야 할 세수를 징수해야 할 세수를 징수하지 못하므로 세수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예측된 세수 규모가 체납에 의해 조달되지 못하게 되면, 정부는 새로운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 결국 부과된 조세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아 결손처분 되면 그 만큼은 사회전체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체납은 납세자들간 세부담의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킨다. 체납은 성실납세자와 체납자간의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한다. 체납으로 인한 세수결손이 거시적인 과급효과라고 한다면, 납세자간 세부담의 불공평성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어렵게 한다.

셋째, 체납은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정비용 투입을 초래한다. 과세자료 업무중에서 징세 및 체납과 관련된 업무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체납 업무는 공무원들이 시간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업무로 그 행정 비용이 매우 높다.

그동안 관세청에서도 「관세 체납정리 강화종합대책」, 「관세 체납일소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추진, 「체납정리활동특별강조기간」 설정 운영 등 지속적인 체납정리 노력으로 체납액의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무역규모의 확대, 관세 징수규모의 증가에 비례하여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관세포탈부정환급 등 범칙조사 관련 추징세액이 전체 체납액의 약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체납자의 대부분이 무재산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채권확보가 어려워 악성체납으로 진행되어 국가재정력을 건실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줄이는 것도 필수요건인 것이다.

현행 제270조 관세포탈물품은 1998년 관세법 개정이전에는 법 제198조의 몰수추징 대상이었기 때문에 수입의제물품에 해당되어 포탈세액을 추징하지 않았으나, 1998년 관세법 개정으로 포탈물품이 몰수추징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입의제물품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세관장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분과는 별도로 관세법 제270조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포탈관세(즉 부족 납부한 관세)를 징수하도록 되어있다. 결과적으로 관세의 체납 중 70%이상이 이에 해당 되고 있어 관세당국을 곤혹스럽게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적 개선방안(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으로서 먼저 관세의 국가재정기여와 관세체납처리과정을 고찰하고, 관세행정별 제도와 관세체납 범칙물품 체납해소방안의 법적 검토등을 연구하여, 관세체납 범칙물품 처리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하여 법적인 개선시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관세의 국가재정기여와 관세체납처리과정

### 1. 관세의 국가재정기여

#### 1) 관세의 국가재정기여도

관세청이 징수하는 관세등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 및 내국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를 의미하며, 각 수입신고건별로 징수액이 결정되어 진다.

최근 8년 동안의 관세 징수액의 변동 추이를 보면, IMF 외환위기사 수입액이 감소하면서 관세 징수액도 감소하였으며, 이후 다시 징수액이 증가추세이나, '04년도 한/칠레를 시작으로 FTA 체결이 증가하면서 관세철폐 대상(품목)이 증가하게 되어 관세 징수액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이 1년동안 징수하는 조세의 규모는 전체 국세의 약 25~27%를 차지(2007년 징수액은 39조3천억원으로 전체의 24.6%)하고 있으며, 관세는 전체 국세의 약 5% 내외이다. 2007년도 수입분 내국세를 제외한 관세징수액은 7조4,10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523억(9.4%)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입액의 증가(전년대비 15.3%)에 기인하며, 전체적으로 관세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1〉 관세 및 내국세 징수실적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관세	57,997	59,234	66,013	68,473	67,965	63,177	68,584	74,107
내국세	173,331	181,805	198,499	217,662	249,936	261,143	295,533	323,228
관세청징수 합계	231,328	241,039	264,512	286,136	317,901	324,320	364,117	397,335
총 국세	929,347	957,928	1,039,678	1,146,642	1,177,957	1,274,657	380,443	1,614,140
총 국세대비*(%)	24.9	25.2	25.4	25.0	27.0	25.4	26.4	24.6

출처 : 관세청(관세행정정보시스템)

\*총 국세대비는 총 국세대비 관세청징수 금액의 비율을 나타냄

또한 미국, 중국 등 무역거래량이 많은 국가들과의 FTA 체결 확대로,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관세의 비중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2) 주요국 관세의 국가재정기여도 비교

관세수입의 재정기여도는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관세율의 인하와 관세율이 낮은 원자재의 수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관세수입의 재정기여도는 향후에도 WTO 다자간 관세인하협상을 등을 통해 관세율이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재정기여도도 함께 낮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동일한 기준에 의해 조사된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관세수입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아 계속될 관세율 인하 등으로 향후 이 들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관세의 재정기여도는 6.34%로 미국(1.5%), 일본(1.8%)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02년 기준)

〈표 2-2〉 주요국 관세의 재정기여도

국 가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중국	태국
재정기여도(%)	1.5	1.8	2.0	6.4	10.0	13.0

자료: <http://www.index.go.kr/egams/default.jsp>

## 2. 관세채납처리과정

### 1) 징세의 결정 및 고지

관세를 확정하는 방식에는 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이 있다.

신고납부방식이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가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경정하여 신고하고 스스로 납부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자진 신고 납부제도라고도 하고, 부과고지방식이란 세액을 처음부터 세관장이 결정하여 이를 고지하면 납세자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고지된 세액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부과고지란 세액의 결정을 세관장이 하여 이를 고지하면 납세의무자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일 내에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제도로서 부과고지의 대상은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가 미비한 무환 수입물품이나 심사에 신중을 요하는 탄력관세 적용물품 등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정확한 세액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음부터 세관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것이다.

〈표 2-3〉 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의 비교

구분	신고납부방식		부과고지방식
의의	1차적: 납세의무자에게 확정권 부여	2차적: 무신고시 관세권자가 확정	과세권자(세관장)에게만 확정권을 부여
확정주체	납세자(납세의무자)	과세관청(세관장)	과세권자(세관장)
확정방식	수입신고서	과세표준과 세액결정	과세표준과 세액결정
확정효력 발생시기	신고서제출시	결정통지서(고지서) 도달시	결정통지서(고지서) 도달시

#### (1) 납세의 고지 방법

부과고지방식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sup>1)</sup>. 여기서 납세고지란 신고납부서의 교부와 같이 관세채권을 확정시키는 세관장의 처분을 말한다.

납세고지에 있어서 그 절차는 세관장이 부과고지방식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1) 관세법 제39조 ③항

때에는 세목·세액·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43조(관세의 현장수납)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sup>2)</sup>).

## (2) 납세와 추정

납세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sup>3)</sup>. 이와 같이 부고고지 납기의 경우에도 신고납부와 같이 15일로 정하고 있으며, 납기가 경과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기의 계산방법 등은 신고납부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리고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 한다<sup>4)</sup>.

신고납부서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관세를 징수한 후에 과세표준, 세율, 감면세 등에 착오가 있어 징수한 세액에 부족이 있었다는 것을 사후에 발견하고 그 부족액을 징수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 추정을 할 경우에는 부과고지의 방식에 의해 납세고지를 한다.

## 2) 체납처분 절차

### (1) 개념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기간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체납처분의 선행절차로는 먼저 독촉(납부최고)을 한다. 그러나 독촉장(납부최고서)에 의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도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률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하는 등 일련의 강제적 절차를 위하여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 (2) 압류

#### ① 압류의 내용

세관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그 독촉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즉시 압류(참가압류 포함.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sup>5)</sup>.

또한 위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

2) 시행령 제36조

3) 관세법 제9조 ①항

4) 관세법 제39조 ②항

5) 관세청, 체납방지 및 체납정리사무처리 요령, 제11조.

한다.

- ①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납부최고서)을 적법하게 발부할 것
- ② 독촉납부기한 경과 후 신속하게 압류조치 할 것
- ③ 국세징수법 제31조 내지 제33조에 규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
- ④ 압류절차는 국세징수법 제3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취할 것
- ⑤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환가하기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용이하며, 납세자 생계유지 및 사업 계속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재산압류 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에 규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관장은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고 국세징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리고 세관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참가압류함에 있어 순위 검토와 아울러 체납액의 징수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압류된 재산으로는 체납정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재산이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 ②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교부청구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타기관의 공사채권에 의하여 강제 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있어 동일 재산에 대한 압류의 중복을 피하고 당해 재산의 환가 대금 중에서 관세채권의 징수목적을 달성하고자 관계 집행기관에 그 배당을 요구하는 강제징수절차이다.

참가압류란 관세의 체납으로 재산의 압류요건이 성립되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 그 재산이 다른 기관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되어 있는 때에는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그 재산에 대한 타기관의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참가압류만 하고 교부청구를 해태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교부청구 시기(경락기일)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참가압류한 세관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하거나 기압류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매각하여야 한다.

그리고 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 중인 체납에 대하여는 그 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 매각 후의 배당가능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배당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별도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있지 아니하고 매각이 용이한 재산을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어 그 재산에 의하여 관세등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sup>6)</sup>.

### ③ 압류재산의 매각

관세의 채권은 금전납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채권의 요구에 충당하기 위하여 압류한 재산을 현금으로 추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금전으로 환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매각처분은 체납채권에 대한 자력집행권의 행사이므로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다.

체납압류재산(미통관 물품을 제외한다)의 공매절차는 국세징수법 제61조 내지 제79조에 정한 바에 의하며, 체납압류 재산 중 미통관 물품으로 체화되었을 경우 관세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되 낙찰되는 경우 당해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를 공제하고 그 잔여액을 체납액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공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처리 함으로써 매각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줄이도록 주력하여야 한다.

- ①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 ② 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써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
- ③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
- ④ 제1회 공매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 ⑤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위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추산가격 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sup>6)</sup>.

한편, 본부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5회 이상 압류물품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며, 세관장은 공매예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사용된 기계, 기구나 공매예정가격 산출시 이미 변질 손상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물품과 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장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예정가격을 산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매각 가능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그리고 본부세관은 공매재산의 보고를 받은 결과 공매예정가격이 불합리하게 산출되었거나(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지 않았거나 기타 착오 등이 발견되는 경우)공매 실시결과 계속 유찰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압류세관장에게 공매예정가격을 재산출하게 하거나 본 요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sup>8)</sup>.

6) 관세청, 체납방지 및 체납정리사무처리 요령, 제12조.

7) 관세청, 체납방지 및 체납정리사무처리요령, 제33조.



#### ④ 채납처분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또는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거나 압류할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채납처분 하여도 채납액에 충당할 잔여 재산이 없어 채납처분을 중지(공매의 중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세채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결손처분이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⑤ 결손처분시 조사사항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시 조사사항은 주소지, 본적지 및 거주지에 대한 재산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채납자의 주소(전 주소지 포함)와 본적지 관할지방 행정기관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재산 및 주소를 조회하여 무재산 확인을 받거나
- ② 채납자의 주소지(전 주소지 포함)의 본적지에 담당자가 직접 출장하여 관계 공부를 열람하여 무재산임을 확인 작성한 복명서에 의한다.
- ③ 채납자가 거주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수색조서 및 이에 대한 무재산임을 확인한 복명서에 의함

또한 사업장 재산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사업장에 대하여는 전 항 제3호에 준하여 수색조서 및 복명서를 작성한다.
- ② 사무실에 대한 임차보증금 유무조사는 건물 주인의 확인 또는 계약서 등을 확인한 후 작성한 담당직원의 복명서에 의한다.
- ③ 전화 가입권 등 기타 재산의 조사는 담당직원의 복명서에 의한다.

그리고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에 대한 조사는 담당자의 복명서 또는 채납자의 카드 정리 사항란에 기재후 결재방법에 의하며,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 처분시 조사사항은 주민등록지에 거주여부 확인조사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지에 따라 추적조사를 하여야 하며, 추적조사 결과 행방불명이 확인되면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을 확인하여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말소 전까지의 전거주지를 확인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조사사항의 예외로서 세관장은 전국의 채납자 명단을 확인 전국의 채납총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 요령 제36조 및 제37조 에 규정한 조사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

8) 관세청, 채납방지 및 채납정리사무처리요령, 제35조.

고 담당자의 복명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체납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 요령 제36조 제1항제3호,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한 사항과 제37조 제3항에 규정한 사항은 2명이상의 공무원이 수색조서를 작성하거나 연명으로 복명하도록 하여야 한다<sup>9)</sup>.

### Ⅲ 관세행정벌 제도와 관세체납 범칙물품 체납해소방안의 법적 검토

#### 1. 관세행정벌제도의 고찰

##### 1) 관세행정벌의 개념

각종 행정법규에는 그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의무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법규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반사인에게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행정벌이라고 하고, 이러한 행정벌이 과하여지는 비행을 행정범이라 한다. 관세법 역시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을 “관세범”이라고 정의<sup>10)</sup>하고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나, 간접적으로는 이를 통해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자의 관세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 2) 관세행정벌의 종류

관세행정벌은 처벌내용에 따라 관세행정형벌과 관세행정질서벌로 구분되는데 편의상 관세형벌, 관세질서벌이라고 한다.

###### (1) 관세형벌

관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법에 정하여져 있는 형을 과하는 것을 관세형벌이라고 하고<sup>11)</sup>, 이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법총칙이 적용되며, 과벌절차도 관세법상 특별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절차에 의한다.

9) 관세청, 체납방지 및 체납정리사무처리요령, 제37조 내지 38조.  
10) 관세법, 제283조.  
11)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6조.

관세형벌은 다시 실질범과 형식범의 2종으로 구분된다.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및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가 실질범에 해당되고, 제276조(허위신고죄 등)가 형식범에 해당된다.

## (2) 관세질서벌

관세질서벌은 관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긴 하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말하고<sup>12)</sup> 이 경우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의, 과실, 착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관세법 위반사실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다. 과벌절차는 관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표 3-1〉 관세행정벌의 종류

조항	죄 명	법정형
제268조의 2	①전자문서 위조변조·동 행사죄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② 미지정 전자문서중계업무죄 등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제269조	① 금지품 수출입죄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②밀수입죄	5년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③밀수출죄	3년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 상당의 벌금
제270조	①-1. 관세포탈죄	3년이상 징역 또는 관세액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①-2. 제한회피 목적 분할 수입죄	
	② 조건미구비·허위구비 수입죄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③ 조건미구비·허위구비 수입죄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④ 부정감면·감면물품징수면탈죄	3년이하 징역 또는 감면·면탈한 관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⑤ 부정환급죄	3년이상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제271조	①269조, 270조 교사·방조범	정범에 준함
	② 268조의 2, 269조, 270조 예비·미수범	본죄에 준함
제272조	밀수전용 운반기구	(필요적) 몰수
제273조	① 269조 죄에 사용된 특수가공 물품	(필요적) 몰수
	② 269조 무품을 포함한 다른 물품	(임의적) 몰수

12) 관세법 제277조

제274조	① 269조, 270조 1항 2호·2항·3항 해당 물품의 취득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② 예비범·미수범	본죄에 준함
제275조	269 내지 271조, 274조 범죄자	징역과 벌금병과 가능
제276조	①허위신고죄 등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중 높은 금액이하 벌금
	②부정 적하목록 작성·제출죄 등	2천만원이하 벌금(과실범:300만원이하 벌금)
	③ 직무집행거부죄 등	1천만원이하 벌금(과실범:200만원이하 벌금)
제277조	①특허보세구역 특허사항 위반죄 등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불부합 적하목록 제출·작성죄 등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82조	① 269조 1항의 물품	(무조건, 필요적) 몰수
	② 269조 2항·3항, 274조 1항1호 물품	(범인소유·점유시 필요적) 몰수
	③ 1, 2항의 몰수할 수 없는 물품	범칙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금액 추정
	④ 279조의 본인, 280조의 법인	1항~3항 적용시 범인으로 간주

자료 : 김화식, (2003). 한국 관세행정형벌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관세행정벌제도의 변천

관세법은 행정법에 속하는 재정법으로서 시대에 따라 관세법의 구성요건이나 형벌규정이 달라지고 새로운 개념의 관세법이 탄생하는가 하면 또 없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관세법칙 규정도 관세행정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관세행정목적에 실효성있게 달성하기 위하여 시대상황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반영하여 제정관세법(법률 제67호, 1949. 11.23)이후 수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의 개정 중 기존의 벌칙체제를 대폭 개편하여 현재와 같은 벌칙체제로 전환시킨 것은 1996.12.30(법률 제5194호)의 개정과 1998.12.28(법률 제5583호)이다. 1996년 개정은 수출입면허제에서 수출입신고수리제로 전환되는 등 수출입통관제도가 대폭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벌칙규정도 “성실한 수출입신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폭 전환되었고, 1998년에는 종전 형량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여 관세법칙물품의 몰수를 축소하고 벌금형으로 처벌하던 질서범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 1) 1996.12.30 관세법 개정(법률 제5194호)

1996년 12월 30일 관세법 개정의 이유<sup>13)</sup>는 수출입자 중심의 관세제도를 지향하여 납세자

13)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관세법 개정이유 (<http://www.klaw.go.kr/>)

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시효제도를 개선하며, 세계무역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지원을 강화하고, 조세형평성의 확립을 위하여 관세범처벌제도를 개편함으로써 관세행정을 선진화하려는 것이다<sup>14)</sup>.

## 2) 1998.12.28 관세법 개정(법률 제5583호)

관세행정벌과 관련하여 1998년 12월 관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수출입사범(제180조제1항2호 및 제2항 개정)에 대한 벌금형량을 완화하고 몰수규정을 삭제하여, 수출입시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승인·허가·추천등 구비조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개별법령에서도 처벌형량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 제180조의 처벌형량이 개별법령의 형량보다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형량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벌금기준을 하향조정하고 몰수를 폐지하였다.

관세포탈·부정수출입·부정감면 물품의 몰수·추징규정을 삭제하였다. 개정전 관세법(제198조)에서는 금지품 수출입죄,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부정감면죄, 밀수품 취득죄에 해당하는 범칙물품을 몰수·추징하였으나, 수입이 자유화된 현실에서 관세포탈·부정수출입의 경우 당해 물품이 사회적 유통을 억제할 필요가 없으며, 행정상 탈루세액을 추징하면 범죄로 인한 재산적 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몰수의 합리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다.

또한 관세포탈죄 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관세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였음에도 당해 물품을 몰수하는 것은 처벌이 과중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벌금형 중 일부를 과태료로 전환되었는데, 벌금형으로 처벌되던 관세법상 경미한 의무위반 및 관세징수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행위(보세건설장 건설시설의 수입신고수리전 가동행위 등 17개 위반행위)를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

14) 구체적으로 보면, ① 종전에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수정신고 또는 세관장의 경정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나, 납세자가 관세등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받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으므로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② 종전에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세징수권은 관세부과권에 의한 조세채권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제기본법의 예에 따라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2년 또는 5년으로 새로이 규정하고, 종전에 2년 또는 5년으로 되어 있던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

③ 국제무역질서의 확립에 긴요한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원산지표시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도록 하고,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령해에서 환적 또는 이적되는 외국물품중 허위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기하였거나 위조상표등을 붙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

④ 국제경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신장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적극적인 관세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상 우대조치인 일반특혜관세(GSP)제도의 도입근거를 신설하되, 대상국가·물품·세율·적용기간 및 시행시기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⑤ 여행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세관공무원이 적발하여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신고를 유도함.

⑥ 현행 2.5퍼센트인 선박관세율을 성격이 유사한 항공기관세율과 같이 무세로 함.

불편을 해소하기위함이다<sup>15)</sup>.

3) 2002.12.18 관세법 개정(법률 제6777호)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조건으로 동 회원국에게 자국에 대한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함에 따라 중국 등 특정국가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자정부구현을 위하여 전자송달제도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제도 등을 새로이 마련하고, 과다하게 반입된 여행자 휴대품의 반송절차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휴대품 반입을 차단하며, 그 밖에 관세가 감면되는 특정물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sup>16)</sup>.

4) 2006.12.30 관세법 개정 (법률 제8136호)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품목간 세율불균형의 해소 등을 위하여 관세의 기본세율을 개편하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절차 및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sup>17)</sup>.

자세한 내용은, 첫째, 통관절차 간소화(법 제149조제3항 및 제4항, 제150조제3항 및 제4항, 제152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신설)이다<sup>18)</sup>.

둘째, 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법 제151조의2 신설)이고<sup>19)</sup>,

셋째,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에 의한 통관보류(법 제235조제7항 신설)이다<sup>20)</sup>.

15) 김화식, (2003). 한국 관세행정형벌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0.

16)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관세법 개정이유 (<http://www.klaw.go.kr/>)

17)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관세법 개정이유 (<http://www.klaw.go.kr/>)

18) 자세한 내용은 ① 육로를 통한 교역에 대비하여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② 모래 등과 같은 물품을 일정량으로 분할하여 반복적으로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도착보고와 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최종 도착보고, 최초 출발보고 및 최초 출발허가 외에는 사증을 받는 것으로 대신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사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19) ①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개항(개항)으로만 운행하여야 하고, 내국운송을 위하여서는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자격을 변경하여야 하는바, 국경출입차량에 대하여도 관련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 또는 도로차량을 국내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20) 자세한 내용은 ① 현재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을 신고한 자의 신청 등을 받아 세관장이 상표권을 침해한 해당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으나, 위조상품의 수출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② 세관장이 직권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되, 수출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함.

③ 상표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국산품의 해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넷째, 연속 수입·수출 물품에 대한 신고 특례 도입(법 제241조제6항 신설)<sup>21)</sup>과 다섯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법 제324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방법 등으로 개정되었다.

### 5) 2008.2.29 관세법개정 (법률 제8860호)

관세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0호)개정이유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심판처리 기구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국세심판원과 지방세심사위원회를 통합한 조세심판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sup>22)</sup>.

## 3. 현행 관세행정벌제도의 실제

관세범은 기본적으로 관세를 탈루하고 국가의 수출입규제를 회피하여 개인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관세범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발생양상은 끊임없이 변천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행정벌을 물품의 수출입 신고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부정수출입과 밀수출입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연구의 목적상 부정수출입에 대한 연구로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부정수출입은 그 행위의 악성이 밀수출입과 같이 세관통관절차를 근원적으로 무력화시키거나 관세법의 목적 실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는 않지만, 관세법의 2대 실질적 목적인 관세수입확보와 수출입규제 물품의 통관관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그 악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현행 관세법은 제270조에서 부정수출입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관세포탈죄(제1항), 부정수출입죄(제2항, 제3항), 부정감면죄(제4항), 부정환급죄(제5항)으로 구분하여 성립요건과 처벌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관세범 동향을 관세체납에 따라 살펴보면, 관세체납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관세포탈 및 부정환급 등 범칙사범과 관련된 것으로 <표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2,121억원, 2005년 2,467억원, 2006년 2,558억원으로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범칙사건 관련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21) 이에 대한 내용은 ① 전선이나 배관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수입·수출 등이 이루어지는 전기·유류 등에 대하여 수출시점 등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일반 물품의 통관절차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② 전선이나 배관 등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전기·유류 등의 물품의 경우에는 1월을 단위로 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③ 연속공급 물품에 대한 수출입신고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유류 등의 통관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22)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관세법 개정이유 (<http://www.klaw.go.kr/>)

관세포탈법에 대한 부족세액 추징이 시행되고 있으나 무재산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추징세액 및 가산금이 수납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 3-2> 발생원인별 관세체납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6월	
	체납액	구성비	체납액	구성비	체납액	구성비	체납액	구성비
관세포탈	1,838	54.2	2,053	56.8	2,357	61.8	2,146	61.5
부정환급	283	8.3	414	11.4	201	5.3	71	2.0
OO철강	524	15.5	524	14.5	524	13.7	524	15.0
기 타	745	22.0	627	17.3	734	19.2	750	21.5
합 계	3,390	100	3,618	100	3,816	100	3,491	100

자료 :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2007). 2007 국정감사 정책현안.

관세체납의 주원인인 관세포탈 등 범칙사건 관련 체납액의 정리 상황은 <표3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6월 기준으로 무재산(재산은닉), 소재불명으로 재산추적중인 체납액이 1,153억원(52.0%)이며 압류·공매중인 체납액이 852억원(38.4%)을 차지하고 있다.

<표 3-3> 범칙체납(관세체납, 부정환급)의 정리단계별 현황(2007년 6월)

(단위: 억원,%)

구 분	압류 공매중	소송 진행중	정리 유예중	독촉중	무재산· 소재불명	기타	계
금액 (비율)	852 (38.4)	102 (4.6)	29 (1.3)	41 (1.9)	1,153 (52.0)	40 (1.8)	2,217 (100.0)

자료: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2007). 2007 국정감사 정책현안.

범칙체납 정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재산(재산은닉), 소재불명자에 대한 조사 현황을 보면 6회 이상 조사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체납되고 있는 금액이 852억원으로 7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표 3-4>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3-4〉 범칙체납 무재산·소재불명자 조사활동현황(2007년 6월)

(단위: 억원,%)

구분	1회~2회	3회~5회	6회~10회	11회이상	계
체납액 (구성비)	119 (10.3)	182 (15.8)	443 (38.4)	409 (35.5)	1,153 (100)

자료: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2007). 2007 국정감사 정책현안.

<표 3-5>에서는 범칙체납금 중에서 2년 이상 체납된 고질체납액이 79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5〉 범칙체납(관세체납, 부정환급) 기간별 현황(2007년 6월)

(단위: 억원,%)

구분	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5년미만	5년이상	계
금액 (비율)	256 (11.5)	1,170 (52.8)	760 (34.3)	31 (1.4)	2,217 (100)

자료 :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2007). 2007 국정감사 정책현안.

## 1) 관세포탈죄

### (1) 성립요건 및 처벌

관세포탈죄는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세액을 탈루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에 성립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sup>23)</sup>. 포탈한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특가법으로 가중 처벌된다<sup>24)</sup>.

본죄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고 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 (2) 탈루관세의 추정과 납세의무자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고(법 제3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납세신고를 하고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법 제38조 제1항, 제3항), 세관장은 수입자가

23) 관세법 제270조 제1항 1호

24) 특가법 제6조 제4항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 그 세액을 경정 고지하거나, 부과 고지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게 된다(법 제38조 제5항, 제29조 제3항). 다만, 법 제148조(수출입의 의제)에 해당하는 물품은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는 않는다.

현행 제270조 관세포탈물품은 1998년 관세법 개정이전에는 법 제198조의 몰수추징 대상이었기 때문에 수입의제물품에 해당되어 포탈세액을 추징하지 않았으나, 1998년 관세법 개정으로 포탈물품이 몰수추징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입의제물품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세관장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분과는 별도로 관세법 제270조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포탈관세(-즉 부족 납부한 관세-)를 징수한다.

부족세액의 추징은 국가의 통치권에 기한 과세권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행정처분이나, 형벌은 수입자가 관세법 제270조에 규정한 범죄행위로 해당 관세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국가의 형벌권에 의거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양자를 병과하더라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세관장은 탈루된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목세액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이 있는 자에게 귀속함으로써 성립하고 과세물건이 귀속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현행 관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된다.

다만, 화주가 불분명한 물품인 경우에는 (i)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ii)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송품장이나 선하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iii) 수입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sup>25)</sup>.

따라서 관세포탈죄나 부정감면죄의 경우 탈루세액을 세관장이 추징하기 위해서는 위의 규정에 따라 화주 등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sup>26)</sup>.

## 2) 부정환급죄

부정환급죄 관세환급을 받을 사유가 없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음으로서 국가 재정권수입을 침해한 경우 성립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sup>27)</sup>.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며 부정환급세액은 범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25) 관세법 제19조 제1항, 관세법시행령 제5조.

26) 김화식, (2003). 한국 관세행정형벌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6-56.

27) 관세법 제270조 제5항

## IV. 관세체납 범칙물품 처리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

### 1. 관세체납범칙물품 처리의 문제점

#### 1) 배수벌금형제도에 의한 과중한 벌금부과

관세법 제280조에는 제1항 제1호에 관세포탈죄, 제4항에 부정감면죄, 제5항에 부정환급죄를 규정하면서, 그 벌금형으로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관세포탈죄), ‘감면 받았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부정감면죄)’, ‘환급 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부정환급죄)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포탈한 세액 또는 불법 취득 가액 등을 표준으로 하여 그것의 몇 배가 벌금형으로 부과되는 것을 배수벌금형<sup>28)</sup>이라고 한다<sup>29)</sup>.

이러한 배수벌금형은 형식적으로는 형벌의 일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불법행위에 기초한 이익 박탈적 행정처분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유사한 제도로써 환경범죄, 조세범죄, 관세범죄 영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매우 특징적인 형벌제도이다.<sup>30)</sup> 또한 미국, 독일 및 일본 등 선진국 어디에서도 인정되고 있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되는 있는 매우 특징적인 형벌제도이다.<sup>31)</sup><sup>32)</sup>

이와 같은 배수벌금형제도는 과중한 형벌로서<sup>33)</sup> 왜 포탈세액의 ‘5배수’의 벌금을 과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도 정확히 주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벌금의 적정성에 대한 설득력이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sup>34)</sup> 이와 같은 과중한 벌금의 과거의 국고주의적 조세벌의 잔재로서 책임주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전근대적인 형벌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sup>35)</sup>

28) “배수벌금형”은 “정액벌금형”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29) 예를 들어 2명이 원가 2억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는 1천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하였다가 관세청에 의해 3천만원을 납부하였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고 가정하자. 이 때 모르고 한 행위도 처벌은 똑같으므로 관세청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되게 되면 벌금은 “관세포탈액의 5배 또는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포탈액이 2천만원이므로 관세포탈액의 5배는 1억원이며 물품 원가가 2억원이므로 그 중 큰 금액인 2억원이 벌금 상한선이 된다. 2명이 각자 실제로 내야 할 벌금은 많이 삭감되지만 여전히 탈루한 관세의 몇 배가 될 것이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별도로 3년 정도 징역을 더 살아야 한다.

30) 이천현, “배수벌금형제도”, 형사정책연구소식 제66호(2001년 7/8월호), 1

31) 이천현, “조세형법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176

32) 배수벌금형의 연혁 및 사상적 배경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이천현”, “배수벌금형 제도”,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66호 (2001년 7/8월호) 1~2.“ 참조

33) 최명근, 조세체제법의 재정비, 한국조세연구소, 1995.3. 63.

34) 이철송, “조세범처벌법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 ‘제5장 6.다.2)벌금의 상당성

35) 이천현, “조세형법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176쪽 ; 이철송, “조세범처벌법의

또한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배수벌금형 제도는 현실적으로 부담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과중한 처벌을 유발한다. 더욱이 대부분 관세포탈범들은 영세하고 납세도의가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형사상의 벌금부과와는 별도로 행정상 탈루된 관세를 추징하기위해 관세 부과고지를 하여도 거의 납부하지 않고 악성채납으로 남게된다.

## 2) 관세포탈죄의 위반행위 및 납세의무자의 불명확

### (1) 관세포탈죄의 위반행위 불명확

현행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은 결과적인 관세포탈의 유무보다는 관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유무를 전제로 범위가 성립되도록 하고 있다. 즉,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라는 목적하에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 세액 결정과 관련된 주요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가 관세포탈죄로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이처럼 규정하는 것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친 허위 신고행위 또는 미 신고행위 자체가 관세포탈 행위로서 기수범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세관의 심사과정에서 바로 잡아져서 결과적으로 관세포탈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구성요건에 의하면 관세포탈 기수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sup>36)</sup>.

이 경우는 관세법에서 규정<sup>37)</sup>한 허위신고죄와 동일한 결과가 되어 상호 모순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제276조의 허위신고죄는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법정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행위가 기수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에 의해 처벌되는 위반행위가 무엇인지 불명확해지게 된다.

또한 현행 관세포탈죄 구성요건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세액”의 범위에 관세만 포함되는지 아니하면 관세 외에 내국세도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 ‘제5장 6.다.2)벌금의 상당성

36) 김화식, (2003). 한국 관세행정형벌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9-90.

37) 제276조제1항 제4호 참조.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2.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중지조치에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3. 제2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24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5.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포탈관세 징수시 납세의무자 불명확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조작하거나 부정감면을 받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한 자와 화주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문언 상 의미와 구조를 살펴보면 수입신고를 한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수입위탁자 등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경우에 화주<sup>38)</sup>가 불분명한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위탁을 받아 물품을 수입하는 화주와 관세포탈죄나 부정감면죄의 범인이 다른 때에도 화주가 분명한 이상 수탁수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할 것이다.

그러나 선의의 수입대행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까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또한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는 단순 명의 제공자일 뿐인데 포탈세액을 추징하게 되면 일반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고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상 책임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추가된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준용하여 수입을 대행한 화주가 아닌 범인이 부담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불법행위에 상응한 납세의무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2. 범칙물품 체납처리해소를 위한 법적 검토

## 1) 관세포탈죄의 확정벌금형 전환 및 몰수·추징 신설검토

배수벌금형제도는 책임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너무 과중한 형벌로써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는 외에, 관세징수행정에 있어 악성 체납을 유발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관세포탈행위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는 가능한 가산세제도에 맡기고, 형벌로서의 벌금형은 확정벌금형으로 전환<sup>39)</sup>하고 포탈액의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벌금액을 포탈세액으로 포함시켜 벌금액을 정하여 “확정 벌금형”으로 개선하는 것을 방안을 검토 할 수 있다. 다른 또 하나의 방안은 관세포탈물품 및 부정감면물품을 관세법 제

38) 통상적으로 화주라 함은 신용장이나 선화증권 등 선적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수하인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화주가 불분명한 때라 함은 서류상의 수하인이 누구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39) 참고로, 조세범죄 영역에서만 배수벌금형을 인정하여 오던 독일과 일본도 각각 1939년과 1947년에 삭제 하였다.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 배수벌금형은 형벌이라기 보다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는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조세범죄의 비윤리적·반사회적 성격이 강조되면서 완전히 삭제된 것이었다.(이천현, “배수벌금형제도”, 형사정책 연구소식 통권 제66호(2001년 7/8월호))

282조의 몰수·추징 대상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이다<sup>40)</sup>.

이 방안은 현재 주요 관세포탈 물품인 농산물의 관세율이 물품원가의 몇 배에 해당하는 등 수입금지적 관세율인 점을 감안할 때 포탈물품을 몰수·추징하는 것이 현행 관세율정책의 취지에 부합되고, 악성 채납을 방지할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2) 결과적 관세포탈행위 처벌 명시 및 즉시 징수규정 신설검토

현행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이 결과적인 관세포탈 유무보다는 적법한 신고유무를 전제로 범죄가 성립되도록 하고 있어 기소시점이 제276조의 허위신고죄와 동일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포탈 관세에 대한 명시적인 징수규정이 없어 탈루세액의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관세법 제270조 제1항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결과범으로 전환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4.25. 2001두10998), 또한 포탈관세의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그 후단에 범인이 납세의무자가 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sup>41)</sup>

위에서 검토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제270조 제1항(관세포탈죄), 제282조(몰수·추징)의 입법론적 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관세법중 관세포탈죄 몰수 추징조항의 개정시안

	현행법률	개정시안
제270조 제1항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 ①제241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06.3.24>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포탈관세의 10배가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포탈관세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범인으로부터 포탈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40) 김화식, (2003). 한국 관세행정형벌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6.

41) 이와 관련하여 관례는 “구 관세법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납부의무자로 되어 있고,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납부의무자로 되어 있고,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그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 할 것으로, 수입업자에 사업자등록상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 수입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면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관시한 바 있다. 또한 일본관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인 「물품의 수입자」는 실질적으로 수입의 효과가 귀속하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물품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 일본관세법 해설, 2002, 15)

	<p>1의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p> <p>2.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p>	
제282조 제2항	<p>제282조 (물수 추정) ①제269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p> <p>②제269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제외한다. &lt;개정 2004.10.5&gt;</p> <p>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p> <p>2.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p> <p>④제279조의 본인 및 제280조의 범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p>	(제270조 제1항에 추가) .....제270조 제1항....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 V. 결 론

관세등의 체납은 마땅히 거두어 들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못해 야기되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세수의 감소라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납세자간의 기회불균등으로 인해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심할 경우 조세순응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세의 여러 기능 중에서 재원배분과 같은 기능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고, 이는 결국 경제의 효율성에도 역기능을 발생시킬 수 있다.

고질적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치 없이 미납액이 결손된다면 성실한 세금 납부자들이 상대적으로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세의 확충보다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세금부터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체납관세의 징세관리 행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악성체납의 방지 및 해소를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했다. 징세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체납관련제도의 검토와 체납자료관리 행정의 검토

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제도내에서의 개선방안으로서 제도적 개선으로 접근하였다.

범칙물품의 몰수 또는 몰수 갈음 추징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관세포탈부정환급 등 범칙사범에 대한 사건은 당해물품을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하도록 관련법 개정 또는 제정하거나 추징금액 미납시 징역형으로 환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같은 법 개정(제정)의 가능성과 그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관세포탈죄의 확정벌금형 전환 및 몰수추징 신설하는 방안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관세포탈행위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는 가능한 가산세제도에 맡기고, 형벌로서의 벌금형은 확정벌금형으로 전환하고 포탈액의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벌금액을 포탈세액으로 포함시켜 벌금액을 정하여 “확정벌금형”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다른 또 하나의 방안은 관세포탈물품 및 부정감면물품을 관세법 제282조의 몰수추징 대상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방안은 현재 주요 관세포탈 물품인 농산물의 관세율이 물품원가의 몇 배에 해당하는 등 수입금지적 관세율인 점을 감안할 때 포탈물품을 몰수추징하는 것이 현행 관세율정책의 취지에 부합되고, 악성 채납을 방지할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곽채기, (1998). 「지방재정론 강의교재」. 전남대출판부.
- 권강웅, (1996). 「축소해설지방세」. 서울:조세통람사.
- 김양수, (2001). 체납처분과 민사집행의 경합. 세법연구회 연구발표논문집.
- 김화식, (2003). 한국 관세행정형벌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영일, (1997). 판례평석, 『법조』 제493호.
- 박두환, (1988). 판례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판례연구』 제 1 집.
- 박재완, (1999). 조세정책과 분배의 정의. 『조세정책』. 제9권 제3호.
- 서기석, (1994). “일본국의 ‘체납처분과 강제집행 등과의 절차의 조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론적 고찰”. 『재판자료』 제66집, 법원행정처.
- 서기석, (1992). “체납처분과 강제집행 등과의 경합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조세정의 논점』



(이태로교수화갑기념논문집).

- 손광락, (2001). 「조세회피이론의 개관과 정책제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5권 제1호.
- 안종석·최준욱, (2003). 국제조세 회피의 행태 및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 이영희·박종현, (1995). 「체납액의 징세관리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월.
- 이중곤·이기형, (2001). 「납세자의 조세회피요인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논문집 제19권 제5호.
- 조재연, (1987).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의 경합”, 『재판자료』 제36집, 법원행정처.
- 한상국, (2002). 조세범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안. 재정포럼 2002년 10월(제76호). 한국조세연구원.
- 현진권. (2000). 체납방지의 중요성과 정책방향. 「국세」. 9.
- 관세법, 2006.10.4(법률 제8050호)
- 관세법시행령, 1993.2.20(대통령령 제13846호)
- 관세법 시행규칙, 2006.5.30(재정경제부령 제329호)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2000. 12. 29(법률 제6305호)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003. 8. 27 (재정경제부령 제325호)
- 국세기본법, 2006.4.28.(법률 제7930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6.6.12.(대통령령 제19513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006.2.14.(재정경제부령 제488호)
- 국세징수법, 2006.10.27.(법률 제8055호)
-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6.4.28(대통령 제19460호)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2006.7.5(재정경제부령 제512호)
- 국고금관리법, 2006.10.4(법률 제8050호)